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0. 10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0. 10

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0. 16

(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임 양 환

나. 개정사유

-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달한 시·군 정보화 기능 보강방침에 따른 정보화 인력의 증원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(안 제2조) : 599명 → 601명(+2)
- 집행기관의 정원 : 584 → 586명(+2)
- 한시정원 명시(부칙) : 증원된 2명은 2002. 12. 31까지 한시정원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행정 및 지역 정보화 사업의 수요를 충족키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, 집행부에 정보화 인력으로 2002년까지 한시정원으로 2명을 증원키 위한 개정 조례안임.
- 이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도외시 할 수 없는 제도적 보강조치라 생각되며 단순한 수치상의 인원 증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 인력의 확보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기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짐.

- 따라서, 기존의 정보화 담당 인력의 적정배치 및 정보화 전담팀 등의 구성을 통하여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임.
-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1명이며,
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586명
2.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5명

부 칙

-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9명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584명 2.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5명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1명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586명 2.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5명</p>